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임은애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2218호

시행일자 2023. 5. 30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
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540호 (2023. 5. 26.)

3. 위 호 관련,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, 우울,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, 정신건강의학과 협의 진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확대 적용하고 있었으나, 격리 권고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시기를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대 상: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
- 내 용: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
- 적용기간: 2020. 12. 1. 진료분 ~ 2023. 5. 31. 진료분

* 2023. 6. 1. 0시부터는 기존 가-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. 끝.

*붙임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